

충주연수 경남아너스빌 센터원 입주자모집공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5.08.07.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866-0243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충주시 거주자		충청북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없음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5.08.07.(목)	25.08.12.(화)	25.08.13.(수)	25.08.14.(목)	25.08.22.(금)	25.08.25.(월) ~ 25.08.28.(목)	25.09.02.(화) ~ 25.09.04.(목)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06.3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yeonsu-honorsville.co.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APT잔여세대(무순위 / 임의공급 / 불법행위재공급)	○				X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8.07.(목)**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충주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충주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5.08.12.(화)	25.08.13.(수)	25.08.14.(목)	25.08.22.(금)	25.08.25.(월) ~ 25.08.28.(목)	25.09.02.(화) ~ 25.09.04.(목)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건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충주연수 경남아너스빌 센터원 건본주택 (주소: 충주시 연수동 1347번지)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실거래 신고,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비조정대상지역인 충청북도 충주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실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수입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아파트 공급계약서(추가선택품목 계약서 포함)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인지세법」 제1조제2항에 의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균등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가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 (☎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없음	없음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 건축과 - 34971호(2025.08.05)**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787-25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9층 4개동 총 243세대

[특별공급 132세대(기관추천 24세대, 다자녀가구 24세대, 신혼부부 56세대, 노부모부양 7세대, 생애최초 2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8년 0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5000338	01	084.9986	84	84.9986	27.0916	112.0902	62.1220	174.2122	51.0164	243	24	24	56	7	21	132	111	12
	합 계									243	24	24	56	7	21	132	111	12

※ 평형환산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특별공급 미 청약 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전용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준공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사유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필로티 등으로 세대가 없는 경우 그 위층을 최하층으로 합니다.

※ 공급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각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계산상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방식 등의 차이로 인해 각각의 면적의 합이 연면적이나 계약면적에서 소수점 이하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수분양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 홈페이지(<https://yeonsu-honorsville.co.kr>)의 동·호 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라 하여도 해당 동, 라인, 층은 상이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84.9986
약식표기	84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급금액 및 납부 일정																(단위 : 세대, 원)
주택형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동 구분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35%)
					대지비	건축비	합계	1회	2회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주지정일
								계약시	30일 이내	26.03.25	26.07.24	26.11.25	27.06.25	27.09.24	27.12.24	
84	243	101동 1,2,3호 102동 1,2,3호 103동 1,2,3호 104동 1,2,3호	2층	12	139,019,855	349,980,145	489,000,000	5,000,000	19,45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171,150,000
			3층	12	139,019,855	349,980,145	489,000,000	5,000,000	19,45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171,150,000
			4층	12	139,019,855	363,980,145	503,000,000	5,000,000	20,150,000	50,300,000	50,300,000	50,300,000	50,300,000	50,300,000	50,300,000	176,050,000
			5~9층	60	139,019,855	377,980,145	517,000,000	5,000,000	20,85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180,950,000
			10~15층	68	139,019,855	390,980,145	530,000,000	5,000,000	21,5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185,500,000
			16~20층	45	139,019,855	399,980,145	539,000,000	5,000,000	21,95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188,650,000
			21층 이상	34	139,019,855	410,980,145	550,000,000	5,000,000	22,5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192,500,000

※ 상기 각 회차별 납입금 납부일이 금융기관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이후 도래하는 최초 은행영업일을 해당 회차의 납부일로 합니다.

■ 공통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5항에 의거 주택형 표기 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공동주택)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 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 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 세대 주거공용 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사업계획변경,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 등의 부득이한 경우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정산 금액이 없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 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공급금액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고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 또는 동별 사용검사를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위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 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멸기간 이내에 소멸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 및 판매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 또는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입주자 임의시공을 제한합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으로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선홈통 BOX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되어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발코니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습니다.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84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5	5
	장기복무 제대군인	4	4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5	5
	장애인	5	5
	중소기업 근로자	5	5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4	24
신혼부부 특별공급		56	56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7	7
생애최초 특별공급		21	21
합 계		132	132

※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천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 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은 청약이 불가합니다.																							
무주택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tr><th>구 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충주시)</th></tr><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tr><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충주시)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충주시)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24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비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충청북도청 장애인 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충북북부보훈지청 보상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충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24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충주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다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비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충주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충청북도 거주자) ■ ②배점																			
	당첨자 선정방법	<table><tr><th rowspan="2">배점항목</th><th rowspan="2">총배점</th><th colspan="2">배점기준</th><th rowspan="2">비고</th></tr><tr><th>기준</th><th>점수</th></tr><tr><td>계</td><td>100</td><td></td><td></td><td></td></tr><tr><td rowspan="2">미성년 자녀수(1)</td><td rowspan="2">40</td><td>4명 이상</td><td>40</td><td rowspan="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tr><tr><td>3명</td><td>35</td></tr></table>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영유아 자녀수(2)	15	2명	2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이상	15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시·도(충청북도) 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3% 범위 : 56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충주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08.07.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205,312원	~8,578,088원	~9,031,048원	~9,733,086원	~10,435,124원	~11,137,162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646,374원	~10,293,706원	~10,837,258원	~11,679,703원	~12,522,149원	~13,364,594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205,313원~ 10,087,437원	8,578,089원~ 12,009,323원	9,031,049원~ 12,643,467원	9,733,087원~ 13,626,320원	10,435,125원~ 14,609,174원	11,137,163원~ 15,592,02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646,375원~ 11,528,499원	10,293,707원~ 13,724,941원	10,837,259원~ 14,449,677원	11,679,704원~ 15,572,938원	12,522,150원~ 16,696,198원	13,364,595원~ 17,819,459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087,438원~	12,009,324원~	12,643,468원~	13,626,321원~	14,609,175원~	15,592,02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4-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7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충주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충주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충청북도 거주자)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당첨자 선정방법	<table><tr><th>가점항목</th><th>가점상한</th><th>가점구분</th><th>점수</th><th>가점구분</th><th>점수</th></tr><tr><td rowspan="4">① 무주택기간</td><td rowspan="4">32</td><td>만30세 미만 미혼자</td><td>0</td><td>8년 이상 ~ 9년 미만</td><td>18</td></tr><tr><td>1년 미만</td><td>2</td><td>9년 이상 ~ 10년 미만</td><td>20</td></tr><tr><td>1년 이상 ~ 2년 미만</td><td>4</td><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td>22</td></tr><tr><td>2년 이상 ~ 3년 미만</td><td>6</td><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td>24</td></tr></table>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4-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21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충주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본 공고는 60㎡이하 주택형이 없으므로, 1인가구 중 단독세대인 분은 생애최초 청약 불가)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충주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충청북도 거주자)			
비고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08.07.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366,906원	~11,151,514원	~11,740,362원	~12,653,012원	~13,565,661원	~14,478,311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366,907원~ 11,528,499원	11,151,515원~ 13,724,941원	11,740,363원~ 14,449,677원	12,653,013원~ 15,572,938원	13,565,662원~ 16,696,198원	14,478,312원~ 17,819,459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1인 가구	160% 이하	~11,528,499원	~13,724,941원	~14,449,677원	~15,572,938원	~16,696,198원	~17,819,459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tr><td rowspan="3">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tr><td>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업」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충주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tr><th>구 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충주시)</th></tr><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tr><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충주시)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충주시)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충주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충청북도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table><tr><th>구분</th><th>가점제</th><th>추첨제</th></tr><tr><td>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td><td>40%</td><td>60%</td></tr></table>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table><tr><th>가점항목</th><th>가점상한</th><th>가점구분</th><th>점수</th><th>가점구분</th><th>점수</th></tr><tr><td rowspan="8">①무주택기간</td><td rowspan="8">32</td><td>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td><td>0</td><td>8년 이상 ~ 9년 미만</td><td>18</td></tr><tr><td>1년 미만</td><td>2</td><td>9년 이상 ~ 10년 미만</td><td>20</td></tr><tr><td>1년 이상 ~ 2년 미만</td><td>4</td><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td>22</td></tr><tr><td>2년 이상 ~ 3년 미만</td><td>6</td><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td>24</td></tr><tr><td>3년 이상 ~ 4년 미만</td><td>8</td><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td>26</td></tr><tr><td>4년 이상 ~ 5년 미만</td><td>10</td><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td>28</td></tr><tr><td>5년 이상 ~ 6년 미만</td><td>12</td><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td>30</td></tr><tr><td>6년 이상 ~ 7년 미만</td><td>14</td><td>15년 이상</td><td>32</td></tr></table>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7년 이상 ~ 8년 미만	16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 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신청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신 청 일 시	신 청 방 법	신 청 장 소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5.08.12.(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건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충주연수 경남아너스빌 센터원 건본주택 - 충주시 연수동 1347번지
일반공급	1순위	2025.08.13.(수) 09:00~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2순위	2025.08.14.(목) 09:00~17:30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건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달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08.22.(금) ~ 2025.08.31.(일)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5.08.22.(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사전서류제출	계약체결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시: 2025.08.22.(금)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https://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개별조회 * 사용 가능한 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또는 카카오톡인증서	• 일시 - 2025.08.25.(월)~2025.08.28.(목) (10:00~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장소: 충주시 연수동 1347번지) ※ 자격확인 서류 제출방법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별도 통보예정.	• 일시 - 2025.09.02.(화)~2025.09.04.(목) (10:00~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장소: 충주시 연수동 1347번지)
일반공급	1순위	• 일시: 2025.08.22.(금)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https://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개별조회 * 사용 가능한 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또는 카카오톡인증서	• 일시 - 2025.08.25.(월)~2025.08.28.(목) (10:00~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장소: 충주시 연수동 1347번지) ※ 자격확인 서류 제출방법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별도 통보예정.	• 일시 - 2025.09.02.(화)~2025.09.04.(목) (10:00~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장소: 충주시 연수동 1347번지)
	2순위			

-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견본주택을 방문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자격검증서류 제출 시 홈페이지(<https://yeonsu-honorsville.co.kr>) 안내 예정이며, 자격검증서류 제출 일정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분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기간 내 예비입주자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입주자 서류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동·호수 배정 추첨참여 및 계약행동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8.07.)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5년 동안 보관 후 지체없이 파기처리 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특별공급 건본주택 방문 청약 신청자는 청약 신청 시에 제출하며, 그 외 청약 신청자는 당첨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서류제출 기간에 제출

■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확인 구비서류 [공통서류와 당첨 유형별 필수서류 및 해당 추가서류 포함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서약서(특별공급)	본인	• 건본주택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020.12.21. 이후신규발급여권은무인발급기에서여권정보증명서를발급받아본인여권과함께제출)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및 대리 계약은 불가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세대원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비속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를 설정하여 발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군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충주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해당지역 거주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군복무기간 10년 이상을 명시)
	○		해외체류(단신부임)관련 증빙서류	본인 및 세대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8항에 의거 당첨자(청약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아래 표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참조]
	○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본인 및 세대원	•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 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 단, 낙찰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①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낙찰 증빙서류 :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 ③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 채권자의 확인서류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 해당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 /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만 인정함, 국가유공자는 보훈관리명단으로 접수함.
다자녀 특별공급	○		다자녀 배점 기준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또는 자녀	• 재혼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자녀	• 본인 : 만19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자녀 : 만18세 이상의 자녀가 미혼으로 미성년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중진 경우(건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본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세대원 포함)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본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본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표1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득입증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 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또는 자녀	• 재혼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중진 경우(건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건본주택 비치)
	○	부동산소유현황 (아래<표>참고)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재산세 납부내역	본인 및 세대원	•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제출

			(아래<표>참고)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청약자와 동일 주소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확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자녀	• 본인 : 만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자녀 : 만18세 이상의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비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생애최초 특별공급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아래<표>참고)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는 개월수(60개월)가 아닌 연도별 횟수를 의미하며 1년의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도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세대원 포함)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원 소득입증서류) ※소득증빙서류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참조. ※해당연도에 소득세 납부 및 1년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도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함.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배우자가 없는 경우)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 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전체포함"으로 발급)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건본주택 비치)
	○		부동산소유현황 (아래<표>참고)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 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재산세 납부내역 (아래<표>참고)	본인 및 세대원	•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제출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중인 경우(건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	○	기존주택 처분관련 서약서	본인	건본주택 비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해외근로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일반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비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로 발급)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비속 (배우자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 한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 경우에 한하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비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본인	- 만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만30세 미만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자)	○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비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 불가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추가서류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서명서류	해당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가 소득증빙서류 (계약체결 전 제출)**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②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또는 국세청 홈택스)
	신규취업자/금년도 전직자	①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② 재직증명서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①,②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원본)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세무서 ② 세무서 또는 등기소
	법인대표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원본), 법인의 재무제표(직인 날인)	① 세무서 ②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③ 위촉·해촉 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 미인정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③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행정복지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직장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②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신고소득사실없음)	① 건본주택에 비치 ② 세무서 또는 홈택스
기타 (근로자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세대 한함)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기간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① 거주지 관할구역 고용센터 등 ② 해당직장

-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01월 0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해당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세 납부 제출 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건강보험공단 ③ 국세청 홈택스 발급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납부내역증명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 / 세무서

■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소유현황' 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② 등기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포함) ③ 해당 행정복지센터
	추가 (해당자)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서울시 : 'ETAX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④ 농지대장, 축산업 허가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② 해당 행정복지센터 ③ 서울시 이택스, 서울시외 위택스 ④ 해당 행정복지센터, 해당 축산과, 토지이음
'부동산소유현황' 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조회 명의인] "신청하신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로는 부동산소유현황 조회내역이 없습니다." 내용 화면 인쇄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정부24 ② 해당 행정복지센터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상기 자산입증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입증서류를 포함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8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기간 및 계약금 납부안내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계좌로 1차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일정	계약장소	대표번호
당첨자 계약 체결	2025.09.02.(화) ~ 2025.09.04.(목)	충주연수 경남아너스빌 센터원 건본주택 (충주시 연수동 1347번지)	1866-0243
※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세대가 있을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분양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청약제한 사항 등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합니다.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동·호수 추첨 및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 개별안내 예정입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 고
분양 대금	우리은행	1005-304-812786	에스엠자산개발(주)건설부문	입금시 동·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재요망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지정 계약기간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지정 계약기간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예시 - 101동 1902호 계약자 → '1011902홍길동' / 103동 803호 계약자 → '1030803홍길동')

■ 계약 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구비사항		해당서류	발급기준	구비서류
	필수	추가(해당자)			
당첨자 본인 계약 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 본인 계약 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여권과 함께 제출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	추가 개별통지서류		•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계약금 입금증		• 건본주택에서는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이체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무주택 소명서류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인 계약 위임시 (본인 외 모두 3자로 간주)	○		위임장	계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건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계약자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본인의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하여야 하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서명]을 직접 기재하여야 함(대리접수 불가)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대리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외국국적동포 또는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제출하여야 함

■ 계약체결조건 및 유의사항

- 본 아파트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청약제한 사항 등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당첨자는 계약체결 후에도 부적격자 당첨자로 확인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청약통장 재사용은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음.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 당첨자 관리함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을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되며,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부정 당첨자로 관리가 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함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향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충주시 또는 충청북도 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민등록 위장 전입자가 본 아파트에 공급 신청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관련법규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건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탑승위치 등)등은 최종 사업계획(변경포함)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건본주택에 설치된 유니트 및 단지내 모형 및 홍보물 일체(POP, 이미지외)는 소비자(분양자외)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실제 설치·시공시 달라질 수 있음
- 분양권 전매 요청시 당해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 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 및 홍보물상의 조감도 및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및 건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기타 계약조건은 공급계약서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주택의 공급계약)에 준함
- 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02.28.시행)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함. 따라서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주체에서 일괄 신고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 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 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 (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주택법」등 관련법에 따름

■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 체결 이전에 건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자격확인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 취소, 당첨일로부터 최대1년간 당첨 제한 등)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건본주택에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각 순위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청약제한사항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중당첨 및 부적격 당첨자의 계약시 아파트 공급계약을 취소 할 수 있음
-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는 정해진 기간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부적격자는 사업 주체로부터 부적격 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7일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 금융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건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적격대출시 중도금 대출이자와 관련하여서는 **중도금 이자후불제**를 적용하며, 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직전 이자납부일까지는 사업주체가 계약자를 대신하여 납부하고, 이후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기로 합니다. 또한, 계약자가 잔금 납부시 사업주체가 대신하여 납부한 중도금 이자후불제에 따른 대출이자를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내 미납시에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자후불제 조건에 대한 요구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할 수 없습니다.
- 대출금융기관과의 중도금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금융기관에 중도금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시 사업주체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분양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 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총 분양대금의 5%)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 약정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 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행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자가 대납하던 중도금대출이자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안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은행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 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 조건 등은 대출은행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연체이자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 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 취급 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일 : 2028년 05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 예정)**

- 2021.02.02.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고,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날을 계약자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지정기간은 최소 45일 이상 제공될 예정이며, 실제 입주일이 입주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된 중도금과 잔금을 실제 입주지정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암반발견,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

-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등),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등**

※ 시설내 운동기구 및 집기류, 가구, 도서 등은 실제 시공시 수량 및 종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리 및 운영은 입주자의 부담으로 진행 예정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하자판정 기준도면은 준공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약식표기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84	11,000,000	1,100,000	9,900,000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공사비	우리은행	1005-904-797063	에스엠자산개발(주) 건설부문

- ※ 지정된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계약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상기 계좌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 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건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함. 건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
-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시 - 101동 1902호 계약자 → '1011902홍길동' / 103동 803호 계약자 → '1030803홍길동')

■ 발코니 확장시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건본주택에 설치하였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 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벽체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비확장 세대의 경우 건축마감(단열재 위치, 벽체 두께 등), 전기설비(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개수, 타입, 배치 등), 기계설비(환기구, 스프링클러, 에어컨 매립배관 등) 등이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비확장 세대의 경우 주방 발코니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및 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와 비확장 시 발코니 바닥단차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창호의 설치 유무, 형태 및 사양은 동별, 층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향후 개폐방향, 제조사,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창호, 단열재 및 마감재의 추가 설치로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에는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의 단열 및 결로 방지를 위하여 확장부위 일부 벽체 및 천장이 다소 두꺼워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발코니 벽체 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창호는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고 실 시공시 난간 및 창호의 개소, 위치, 난간의 높이, 난간 및 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 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에너지등급에 따른 단열재 등의 에너지등급 관련 자재와 같이 설치되어 개폐시 창호가 다소 흔들릴 수 있으며, 적절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 시 선풍통 및 드레인 등의 위치, 개소가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하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일부 배관이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시공되어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조명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 기타 확장 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겨울철 실내 습도가 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지 쉬우며 각 세대에 설치된 환기 시설을 주기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환기 시 결로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됨)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의 대피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은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되며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미확장 부분의 외부창호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창호는 기능,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창호 설치 기준을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실 시공시 공동주택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동일평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깊이 및 천장고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허용오차 내)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재 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 여건에 의해 발코니 확장 계약이 가능한 기한 이후에는 계약체결 및 추가선택품목 선택이 불가합니다.
 - 모든 세대는 발코니에 실외기 공간이 별도로 설치될 수 있으며 에어컨 가동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발코니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보일러가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보일러 가동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별도의 보일러실 구축되지 않음)
 -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세탁기가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세탁 및 배수용 수직배관 또는 상부세대 세탁 및 배수용 수평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환기시스템이 설치되며 설치에 따라 배관 노출, 건축임면 및 내부 마감(창호, 그릴창호, 전등 사이즈, 전등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입주 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 시공시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와 무관합니다.
- ※ 상기 발코니 확장금액은 발코니 확장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노임, 이윤을 포함하여 책정한 금액으로써 청약 및 계약 시 발코니 확장공사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이에 대한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내에서 구조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시 제공 품목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추후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발코니 확장 시 제공품목	현관	- 현관창고 가구도어 - 현관창고 시스템가구
	거실	- 우물천장

	주방	- 냉장고장 - 팬트리 가구도어 - 팬트리 시스템가구
	침실1	- 드레스룸 가구도어 - 드레스룸 시스템가구
	침실2	- 붙박이장
	부부욕실	- 부부욕실 일반형비데
	발코니1	- 전동형 빨래건조대(조명일체형)

■ 추가 선택품목 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 일정

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대금	우리은행	1005-504-797039	에스엠자산개발(주)건설부문

- ※ 지정된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대금(계약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상기 분양대금 및 발코니확장 공사비 입금계좌와 상이하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 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함.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음
-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음 (예시 - 101동 1902호 계약자 → '1011902홍길동' / 103동 803호 계약자 → '1030803홍길동')

■ 추가 선택 품목(유상)

1.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발코니 확장 시 선택 가능)

가) 시스템 에어컨 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약식표기)	제조사	선택형	선택안	수량	설치 위치	계약금(10%)	잔금(90%)	공급금액
						계약시	입주지정일	
84	삼성 전자	IOT 보급형 (공기청정 無)	선택1	3대	거실+주방+침실1	570,000	5,130,000	5,700,000
			선택2	5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870,000	7,830,000	8,700,000
	삼성 전자	IOT 고급형 (공기청정 有)	선택3	3대	거실+주방+침실1	610,000	5,490,000	6,100,000
			선택4	5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930,000	8,370,000	9,300,000

나)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유의사항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이하 시스템 에어컨) 옵션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 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 계약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함
- 시스템 에어컨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생산단종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음(계약전 위치 확인 요망)
- 시스템 에어컨의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임
- 시스템 에어컨 미선택 시 시스템 에어컨을 위한 천장 냉매배관 및 드레인 설치되지 않음
-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냉매 매립배관은 거실(스탠드형), 침실1(벽걸이형)에 기본 설치되며, 시스템 에어컨 계약 이후 선택 취소 시, 기본제공 품목인 냉매 매립배관의 시공은 불가하오니 양지 바람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거실-스탠드형, 침실1-벽걸이형 전용 콘센트 및 냉매 배관과 박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해당 공사비용은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공사비용에 차감 반영 됨
- 상기 시스템에어컨 설치금액은 매립냉매배관(거실 및 침실1) 미시공 등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은 견본주택과 달리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 환기 디퓨저의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정배관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됨 (제조사 조합을 적용)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사항 옵션계약이 불가하며, 옵션계약 일정은 별도 통보할 예정임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다용도실)에 냉매 및 드레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음, 또한 내부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은 편의상 냉난방용으로 설치하였으며, 본 공사 시 적용될 시스템에어컨은 난방기능이 없으며, 모델도 상이함

2. 인테리어 추가 선택품목 (발코니 확장시 선택 가능)

가) 개별품목, 마감재 및 가구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선택위치	품목			계약금(10%)	잔금(90%) 입주지정일	공급금액	
개별 옵션	현관	1	선택1	- 3연동 슬라이딩 중문(수동)	150,000	1,350,000	1,500,000	
			선택2	- 3연동 슬라이딩 중문(자동)	250,000	2,250,000	2,500,000	
	거실/주방/ 복도/팬트리	2	- 바닥마감특화 (이태리산 포세리타일)			390,000	3,510,000	3,900,000
	침실3	3	- 붙박이장			130,000	1,170,000	1,300,000
마감재 및 가구	현관	4	[프리미엄 신발장] - 현관창고 브론즈경도어, 신발장 제균기, 쿼션반			70,000	630,000	700,000
	현관/거실/ 주방/복도	5	[벽체마감특화] - 거실아트월/소파벽 이태리산 포세리타일 - 현관/복도/거실창호벽/주방다이닝벽 시트패널			290,000	2,610,000	2,900,000
	주방	6	선택1	[마감특화1] - 벽체/상판 엔지니어드스톤 - 와이드사각싱크볼+프리미엄싱크수전+배수구 - 와이드아일랜드+하부장수입하드웨어+빌트인콘센트	350,000	3,150,000	3,500,000	
			선택2	[마감특화2] - 벽체/상판 세라믹 - 와이드사각싱크볼+프리미엄싱크수전+배수구 - 와이드아일랜드+하부장수입하드웨어+빌트인콘센트	560,000	5,040,000	5,600,000	
			선택3	[프리미엄 가구1] - 벽체/상판 엔지니어드스톤 - 와이드사각싱크볼+프리미엄싱크수전+배수구 - 프리미엄 미드웨이 액세서리 - 상부장 하부 라인조명 - 와이드아일랜드+하부장수입하드웨어+빌트인콘센트+바카운터 - 인덕션3구 - 홈바형 장식장	720,000	6,480,000	7,200,000	
			선택4	[프리미엄 가구2] - 벽체/상판 세라믹 - 와이드사각싱크볼+프리미엄싱크수전+배수구 - 프리미엄 미드웨이 액세서리 - 상부장 하부 라인조명 - 와이드아일랜드+하부장수입하드웨어+빌트인콘센트+바카운터 - 인덕션3구 - 홈바형 장식장	920,000	8,280,000	9,200,000	
	드레스룸	7	[프리미엄 드레스룸] - 벽판넬형 시스템가구 - 조명형 선반 - 조명형 화장대			430,000	3,870,000	4,300,000
	가족욕실 부부욕실	8	[프리미엄 욕실] - 벽체/바닥 포세리타일 - 프리미엄 세면기 - 프리미엄 욕실자재(수전/액세서리) - 프리미엄 샤워부스(부부)/프리미엄 욕조(가족)			330,000	2,970,000	3,300,000

- 추가선택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하여 자재 발주가 진행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항목별 개별선택이 불가하며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므로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본 공동주택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 선택하시고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중문 미선택 시 신발장 옆 날개벽이 설치되며 디딤석 위치가 변경됩니다. 미선택 시 중문틀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현관중문은 형태, 재질,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선택 유무에 따라서 일부 현관가구 마감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기밀,차음,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 차단 목적에 한하니 이점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 현관중문 구성품 중 유리는 강화유리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서 파손될 수 있습니다.
- 프리미엄 신발장 미선택 시 신발장 하부 선반은 오픈되지 않으며, 기본형 선반이 설치됩니다.
- 프리미엄 신발장 미선택 시 별도의 전기 배선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바닥마감특화, 벽체마감특화, 주방프리미엄가구 선택 시 선택사항에 따라서 시공범위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후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 바닥마감특화(포세린타일) 선택 시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서 나누기가 추가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벽체마감특화 미선택 시 신발장의 위치는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벽체 코너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불박이 가구(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힌지, 레일, 조명 등)는 본 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불박이장 선택 시 설치부위 가구 후면 및 바닥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되며 금액 산정 시 해당하는 설치비용은 감액하여 책정하였습니다.
- 평면에 따라 가구길이 및 디테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의 개폐방향, 제조사, 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기본형 타일(욕실 바닥 및 벽체, 주방 상판 및 벽체, 현관 바닥, 아트월 등), 포세린 타일, 엔지니어드스톤, 세라믹 타일(추가선택품목)의 패턴 및 결(베인)은 규칙적이지 않고 랜덤하게 시공되며 색상, 줄눈 나누기 및 간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벽체마감특화 미선택 시에는 일반타일(800*400) 아트월과 실크벽지로 시공됩니다.
- 시트패널 고정을 위해 본공사 시 타카자국이 보일 수 있으며, 시공 디테일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 주방마감특화 및 프리미엄가구 선택 여부에 따라 상판 전면 두께 및 주방가구 규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자재특성상 이음매 간격 및 나누기도는 현장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마감특화 및 프리미엄가구 미선택 시 벽체 타일/상판 인조대리석, 일반 싱크볼, 일반 싱크수전이 설치되며 공급금액 산정 시 해당하는 비용은 감액하여 산정된 것입니다.
- 프리미엄가구 선택 시 제공되는 아일랜드 바카운터, 홈바형 장식장은 과도한 물리적 충격에 의하여 변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드웨어, 악세서리는 제품 단종 등의 이유로 동등 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제품 개발에 따라 기능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라인조명이 적용되는 가구는 점검을 위한 안정기가 설치되어 일부 수납 영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가구(기본확장형, 유상선택형)는 제조사,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가구(기본확장형, 유상선택형)는 과도한 무게로 인한 선반 휨,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프리미엄 드레스룸 선택 시 조명형 선반을 이동할 경우 전선 및 타공부위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내 간접 및 라인조명이 포함되는 경우 배선, 안정기 설치 등으로 인하여 가림판이 설치될 수 있으며 조명의 크기와 길이, 등기구 사양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용도에 맞게 선택 바라며,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형태에 대해서는 카달로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 공사시 형태, 재질, 사양 등이 동급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추가선택품목의 품목에 따라 일반세대(기본확장형)와 마감방법 및 마감의 재료 분리대등 마감시공이 상이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조명 및 개별기기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선택위치	품목				계약금(10%)	잔금(90%) 입주지정일	공급금액
조명	거실	9	[거실 조명특화] - 거실 우물천장 리니어등 감성조명 - 거실 아트월/소파벽 등박스+픽처레일등			430,000	3,870,000	4,300,000
	주방	10	[주방 조명특화] - 주방 우물천장+간접등			55,000	495,000	550,000
	침실	11	[침실 조명특화] - 침실1,2,3 프리미엄 직부등 감성조명			45,000	405,000	450,000
개별기기	냉장고+ 냉장고장	12	선택1	인피니트 패키지(삼성)	- 키큰장 수입하드웨어+냉동고1대+와인냉장고1대+ 냉장고1대+김치냉장고1대	1,915,000	17,235,000	19,150,000
			선택2	비스포크 패키지(삼성)	- 키큰장 수입하드웨어+냉장고4도어 1대+ 김치냉장고3도어 1대	570,000	5,130,000	5,700,000
			선택3	오브제 패키지(LG)	- 키큰장 수입하드웨어+냉장고4도어 1대+ 김치냉장고3도어 1대	705,000	6,345,000	7,050,000
	전기쿡탑	13	선택1	하이브리드(삼성)	- 하이브리드(인덕션 2구+하이라이트 1구)	60,000	540,000	600,000
			선택2	인덕션(LG)	- 인덕션 3구	110,000	990,000	1,100,000
	전기오븐	14	선택1	일반형(LG)	- 일반형 전기오븐(38L)	54,000	486,000	540,000
			선택2	프리미엄형(삼성)	- 프리미엄형 전기오븐(50L)	89,000	801,000	890,000
	식기세척기	15	- 식기세척기(LG)			120,000	1,080,000	1,200,000
	주방TV	16	- 13인치 스마트 주방TV			35,000	315,000	350,000
	도기일체형 비데	17	- 가족/부부욕실 도기일체형비데			180,000	1,620,000	1,800,000
	복합환풍기	18	- 가족/부부욕실 스마트복합환풍기			105,000	945,000	1,050,000
	제습기	19	- 드레스룸 빌트인제습기			79,000	711,000	790,000

※ 추가선택품목 -인테리어 유의사항

-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등기구, 콘센트, 스위치, 온도조절기의 수량, 위치 및 디자인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전 및 하드웨어는 제품 단종 등의 이유로 동등 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제품 개발에 따라 기능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조명특화는 주방프리미엄가구 선택 시 선택 가능합니다.
- 침실조명특화 미선택 시 일반등이 설치 되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수량, 스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위치, 인접세대, 상/하층부 세대의 발코니 비확장 선택, 천장 내 설비배관 등에 의하여 우물천장의 천장고 및 길이, 크기,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제공되는 냉장고장은 냉장고/김치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만 제공되며 상부에는 수납장이 설치됩니다.(일반 냉장고 설치 시 가구프레임보다 돌출될 수 있음)
- 추가선택품목에 따라 냉장고장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 순서 및 열림 방향은 좌우세대 및 타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냉장고/김치냉장고를 위한 별도의 공간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기쿡탑(인덕션3구 및 하이브리드 쿡탑) 미선택 시 3구형 가스쿡탑이 설치됩니다.
-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미선택 시 가구 수납장이 설치됩니다.
- 식기세척기 선택 시 표면이 가구 도어패널로 설치됩니다.
- 스마트주방TV는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미선택 시 10"형 주방TV가 제공됩니다.
- 각 형별 가전제품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단열, 벽체, 창호, 마감재 사양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가전제품은 단종 등의 이유로 동등 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제품 개발에 따라 기능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전제품은 선택품목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빌트인 가전의 전원 연결을 위해 가구 내 전선 인출구가 타공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추가선택품목의 경우 사용에 따른 소음 및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가전류의 에너지효율등급은 동일한 제품일지라도 등급산정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기일체형비데 미선택시 가족욕실-기본형 양변기+기본형시트, 부부욕실-기본형 양변기+일반형비데가 설치됩니다.
- 스마트복합환풍기 미선택시 배기팬이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변경됩니다.
- 모든 추가선택품목의 경우 사용에 따른 소음 및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수납공간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용도에 맞게 선택 바라며,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형태에 대해서는 카달로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 공사시 형태, 재질, 사양 등이 동급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10

유의사항 및 단지 내외부 여건

※청약자 및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공통사항

공통 사항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합니다.

- 본 공동주택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 전 유상옵션(발코니 확장비용, 시스템에어컨, 기타 추가 선택품목)가격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에 의거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준공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설계, 인허가 변경, 지적확정 측량 및 공부정리 결과 등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면적증감에 대하여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확정 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전에 사업부지(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일조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현장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물(견본주택, 카달로그,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 등에 표시된 주변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차도, 하천, 공장, 공원, 녹지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관계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조경 등의 변경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D/A, 상가, 기타 부대시설, 조경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 및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 인근 주변 개발 시 이로 인하여 소음 및 조망의 간섭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주택의 사업주체와는 무관함을 확인 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주변 도로 인접 등으로 인하여 근접한 동과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충청북도 충주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을 준수합니다.
-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 계약자는 소유권 이전 시 대출금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 및 등기절차에 협조하여야 하고, 해당 분양주택의 담보평가결과 담보부족분이 발생할 때에는 담보부족분에 대한 중도금 대출금액을 책임지고 대출은행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사업주체가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계약시점에 따라 매도인의 분양조건(분양가격, 옵션제공 등)은 변동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추후 소급적용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자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 이후에 성능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공자에게 품질 또는 성능미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입주 이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 저하 발생 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의 책임입니다.

	•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홍보물(카탈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 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 오타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 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도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 시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확인하시어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카탈로그, 홍보물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이미지컷은 전 세대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제반 내용 및 건립된 견본주택은 사업계획승인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후 현장 여건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단지 내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옥상조형물, 문주, 아파트 단지명, 동번호, 외벽로고 등의 위치, 형태, 재질, 외부색상, 명칭 2.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어린이놀이터, 생활폐기물보관소, 자전거보관소, 포장, D/A(환기구), 배기관, 옥외 시설물 등의 디자인, 위치, 개소 3. 기타 관련법령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사항 •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전쟁, 내란, 문화재발견,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원자재 수급 문제 및 전염병 발생, 정부 정책이나 관계법령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지체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 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공급가격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옥션의 품목 및 모델, 가격 등은 계약서 작성 전 입주자모집공고 및 옥션 안내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품목, 모델, 가격 등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 청약자격 전산수룩한 자 중 주민등록사항(거주지역, 세대주기간, 부양가족 등)등의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룩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 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내용과 청약자 기재사항을 반드시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분양사업자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해당 시점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무허가 중축이 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 처벌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합니다. • 공급계약서 분실 사유로 공급계약서 재발행요청시 경찰서 분실신고 접수증 및 재발행 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의 절차에 따라 입주 전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인허가청에 제출 후 입주민들이 잘 볼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 본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법인·단체포함)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가.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구입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 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단, 공급계약이나, 매매는 부동산거래신고로 갈음하고 중여, 교환 등만 해당함) 나. 외국인이 상속 또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합니다. 라.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치고 외국인 부동산등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부동산을 취득하여야합니다. ※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서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명칭	• 단지 내 명칭 및 동 번호 등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 시 본 공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할관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여 질 수 있으며,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시공사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견본 주택/홍보물	• 온라인, 홈페이지, 각종 인쇄물 등 각종 홍보물에 삽입된 광역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 컷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의 VR동영상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인테리어 사진은 견본주택을 사전에 촬영하여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용품이 포함된 것으로, 계약 전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견본주택 상의 전시품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입주민 회의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길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분양홍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물(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도로내 시설(횡단보도, 과속방지턱, 교통표시 등),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공급안내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단지모형도, 전시물(건축물, 조경 및 시설물 등)의 CG(컴퓨터그래픽)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분양대금 납부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홍보과정에서 주변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계획 또는 예정사항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하오니, 관련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인테리어 소품가구, 전시용 가전제품, 연출용 조명 등) 등은 관람자 및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제공되지 않는 품목들이니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 등은 사업주체에서 연출한 사항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양지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 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품질, 품귀, 제조회사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 개발 및 발주에 의한 동등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증,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변경)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개관 전 사전에 이루어진 광고·홍보상 부대시설 등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축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발코니 창호(유리포함), 유리슬라이딩 도어(현관중문), 대피공간 도어, 현관 방화문, 가구, 마루, 벽지 등은 본 공사 시 입찰 결과에 의해 제조사, 브랜드, 하드웨어, 일부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PL창호 창썬본틀과 MC부재면 시트마감재는 일체화되어 있으나 본시공시 창썬본틀과 MC부재면 시트마감재가 각기 분리 접합시공 됩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견본주택 및 CG,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동일 주택형이라도 평면이 좌우 대칭되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제품 사양에 따라 좌우대칭 제품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니 청약(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시공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및 CG 이미지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추가선택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며,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추가선택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시에만 설치되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모형의 조경, 조명, 식재, 시설물(DA,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 바닥마감 패턴,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및 단지 레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불박이류[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상·하부장 및 아일랜드장, 욕실장, 욕조, 위생도기류 등 은폐부위]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견본주택은 기본으로 설치되는 마감재 이외에도 별도 전시품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에 설치된 아래 품목은 실시공시 제품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설비기기 : 온도조절기, 선풍통, 바닥배수구, 위생기구, 욕실 악세사리, 각종 수전류, 스프링클러 헤드, 점검구, 환기용 디퓨저, 전열교환기 2) 전기기기 : 조명기구, 조명 스위치, 콘센트, 월패드, 디지털도어락, 세대분전반, 세대 통신단자함, 전자식 스위치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운영을 위한 것이며 본공사 시 소방법규에 적법하게 설치되며, 실별 설치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으며, 욕실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본 시공 시 냉방전용(난방기능 없음)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이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가능하며, 전시된 제품의 디자인 및 사양이 변경되오니 옵션 계약시 확인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설비의 위치, 개소, 크기, 디자인은 환기성능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수, 오수 배관 및 분배기의 위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주방가전 미선택 시 기본형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되며, 설치하는 가전의 크기에 따라 가전 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수납공간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하신 후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학교관련 유의사항	• 초등학교생은 칠금초등학교에 배치 예정입니다. • 중학생 및 고등학생은 학교군 내 배치가 가능하나, 추후 학력인구 발생에 따른 통학구역 설정시 원거리 통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사업계획 변경, 인근 개발사업 추이 및 급당 하향 조정 등 학생배치여건 변화 등에 따라 학생배치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교육청에 문의 바랍니다.

■ 설계관련 유의사항

구 분	내 용
설계고지사항 (단지 내외부여건)	• 각종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현장)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 현황 및 현장 여건, 주변 개발, 조망권, 일조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또는 지역 내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시공사의 과거 분양아파트와 비교하여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조경 등의 추가 설치나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변경)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등의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단지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의 변경 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동법시행령 제5조 및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됩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선행 시공 세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행정명령,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행정 명령, 기타 도시계획시설 미준공, 공부 미정리 등의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입주시기, 소유권 이전절차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 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현장 확인 후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은 2025년 06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 현장여건 반영, 구조·성능·품질 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옹벽, 담장,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통출입구, 외부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및 기타 「주택법」, 「건축법」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은 현장 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협의, 협의과정에서 향후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 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조경시설 등은 실 시공시 대관 인허가과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기타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정 및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부지 경계 외부의 도로, 보행자통로, 인근 주거시설 및 기타 공사현장, 혐오시설 등의 현황은 입주자 모집공고 및 청약계약시 필히 확인하시어 청약 및 계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부지 주변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 노외주차장, 보행자도로, 도로 및 보행통로)은 이미지 연출용으로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 및 기타 변경 사항 등에 따라 향후 포장패턴 경사도 및 레벨계획 형태, 디자인, 시설과 용지 등이 변경 될 수 있고, 아파트 부지 내 시설이 아니므로 입주자 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역 주변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교통안전시설, 소음저감시설 등)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향후 차기 인허가 승인 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면적, 폭, 길이, 경사, 레벨, 개소 등이 분양홍보물 (모형, CG, 카탈로그 등)에 표현된 사항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함) 이 경우 입주시기 지연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본 단지 주변으로 당 사업의 분양 시점 이후 단지 주변으로 건물 및 기반시설 등의 신축 및 개설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당 단지의 환경 변화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도로와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행정청에서 도로의 설치 및 유지 보수, 개선 등의 목적으로 공사 등 관련 작업을 추진할 시 입주자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도로 및 인도(도시계획 도로)의 개보수공사 계획 수립과 시행에 따라 도시계획도로와 접한 당해 아파트 부지내 도로 및 인도에 대해서도 병행하여 동시에 시행할 경우 입주자 측에서 공사 시행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공사로 인한 피 분양자, 소유자 또는 세입자, 이해관계자 등은 본 도로(보도 포함)를 대상으로 보상 청구 등 기타 관련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는 주변 기반/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시 반드시 현장확인을 통하여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및 추가 전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에는 조경(조경석 쌓기 포함)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행정 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설치 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와 면한 인접 대지 및 도로 등은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단지 경계부의 레벨 차이에 의한 옹벽 및 사면의 위치 및 높이, 종류, 노출 범위, 길이, 형태, 재질, 디자인 등은 실 시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경계에 면한 인접대지 및 인접도로의 레벨에 따라 단지 외곽에 면하여 계획된 동의 일부 세대는 단지 외부 통행자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인접도로와 본 단지 내 레벨차이에 따른 보행자 동선 계획은 차후 실 시공시 도로와의 관계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대지 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조경시설, 포장 등),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역 내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시공사의 과거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조명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변경)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 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모형,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주동 형태 및 배치계획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 위치에 따라 분양 받을 주택이 일조권 및 조망권, 프라이버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차량 통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쓰레기분리수거장의 악취, 본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는 소방차 진입 공간 및 에어매트 설치 구간에는 차폐식재가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저층 세대는 차량 전조등, 보행자 시선 등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등과 인접한 세대는 이용자 활동으로 인해 소음 및 시야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반층 헬륨 인접 세대는 배기팬 작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민복지시설 실외기 설치 위치에 따라 실외기 소음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관련 법령(건축법, 피난·방화구조 기준 등)에 따른 대피공간이 설치되지 않으며,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단지의 일부 저층 세대는 단지 내 조경 및 커뮤니티 시설, 소방 관련 구조물 등의 배치에 따라 프라이버시 침해 또는 소음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101동 2호, 102동 3호 라인의 일부 저층 세대는 운동시설과 가까워 운동 시 발생하는 소음이나 외부 시야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102동 2호, 103동 3호 라인의 일부 저층 세대는 휴게정원과 인접해 있으며, 이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시야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3동 2호, 104동 3호 라인의 일부 저층 세대는 운동시설과 가까워 운동 시 발생하는 소음이나 외부 시야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104동 1호 라인의 일부 저층 세대는 경로당과 가까이에 위치해 있어 실외기 설치 시 소음 발생 가능성도 있습니다.
 - 101동 1호, 3호 라인도 어린이버스 승하차와 가까워 외부 통행과 시야 간섭이 일부 세대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관련법규에 따라 채광/정북방향에 맞춰 적절한 높이의 건축 설계되었으나, 저층세대 등 수인한도 불만족 세대의 경우 계약자의 요청 시 관련 내용 설명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별도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 단지 내 공동주택 발전기용 급배기 D.A가 설치되어, 발전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 연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은 주변 건물 및 구조물, 기존 건물의 재건축 및 증축, 단지 내 인접 동 및 같은 동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 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구조 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외에 레벨차가 있는 구간에는 자연석 쌓기, 비탈면, 옹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은 주행 차량 또는 보행자로 인해 생활권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 형태와 재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계단실 내 창호는 일부는 고정창, 일부는 프로젝트창으로 적용되며, 프로젝트창의 적용 위치는 층별, 동별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홀 내 창호 크기는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은 주변 건물 및 구조물, 기존 건물의 재건축 및 증축, 단지 내 인접 동 및 같은 동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주출입구(필로티 포함)는 주변 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구조 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 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지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 통신 등 각종 인입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 및 진동·악취 발생·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거 동의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 주차장 경사로 등),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 램프, 단지 주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불빛, 본진 등에 의한 생활권과 사생활 침해 등 각종 환경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간별 사업 부지 단지 구간에 조경석 쌓기 또는 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인허가 조건, 미관,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101동~104동) 상부에 공용부 전기 생산을 위한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규모(크기, 높이, 개소)는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 배치 및 일조량에 따라 일부 동 혹은 전체 동에 분산 설치되며, 구조물에 의해 설치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 배관, 연도, 고가수조,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태양광 집광판, 이동통신 중계기,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소음 및 진동·사생활 침해,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 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 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치장석재/벽돌 및 필로티 마감은 비구조 요소 내진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은 필로티가 설치되며,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를 제외한 보행자 전용 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 인원의 통행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수량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외 계단은 실시공 과정에서 디자인, 색상, 설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 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조경 공간(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포함)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외 조경 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저층 세대와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소방 계획, 인-허가 과정 등에 의하여 식재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시설 내 인터넷 필요 시 통신 관련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 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시설물의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중 광중계장치는 지하주차장 경사로와 인접한 헬름 내에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 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 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지상 일부구간에는 무선통신 안테나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줄눈 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등), 공용부 디자인(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경비실, 부대시설 등), 외부 시설물(문주, D.A, 자전거 보관소, 쓰레기분리수거함 등), 조경 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옹벽 디자인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 발주처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의 고유한 업무 영역으로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저층부는 석재, 석재뿔칠, 페인트 등 기타 자재로 마감되고, 주동 형태에 따라 각 자재의 적용 비율 및 적용 층수는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문주(진입공간높이 4.5m 이상)는 이미지 연출사항으로 진입 공간 배치 현황 및 현장 여건에 맞춰 형태, 크기, 배치가 결정되며, 문주 설치로 인해 주 진입부에 위치한 일부 저층 세대에서는 세대 조망에 간섭 및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문주에 설치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외부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은 단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에 대해 타사 및 당사의 타 단지를 비교하여 추가 설치 또는 교체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에 적용된 외관 특화, 입면, 색채 및 마감재 등 디자인 일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 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아파트 옥상 및 외벽에 경관조명, 조형물 및 로고(BI) 등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 일조,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LED조명으로 인하여 인접 세대는 빛반사로 인한 눈부심, 소음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은 빔공해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 및 작동에 제약이 있거나 위치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옥상장식물 등 경관 조명이 결합된 외관 요소는 발주처 및 인허가청 협의를 통해 설치하는 것으로 입주예정자의 요청에 의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없습니다. 시공 안전성을 고려하여 대형 옥상구조물은 당사의 공법으로 설치되며 시공위치에 따라 모형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랜드마크동 옥탑구조물의 디테일, 프레임 두께, 색상, 사이즈, 조명, 루버, BI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저층 석재 부위는 동별, 라인별 높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경로당), 경비실 등 부대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보일러 연도, 에어컨 실외기, 배기팬, 설비 시설 등)로 인해 일조권·조망권·소음 및 진동·열기·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부속시설물의 위치 및 크기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경로당, 경비실 옥상마감은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실외기는 현장 여건 및 관리동선에 따라 외부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계획된 주민공동시설(어린이놀이터, 야외 운동시설, 지하 커뮤니티 등)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구성 이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운영해야 합니다. 주민공동시설 및 공용부분 내 일부 공간은 일정기간(입주개시후 30개월 내외, 단지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입주관리, 신속한 하자보수 등 입주민을 위한 입주지원센터, A/S센터, 자재보관용 장소가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사용자 등(임대차 관련 비용 포함) 일체를 요구할 수 없고, 다른 공간으로 이동(이전) 등을 요청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기본 마감 외의 시설 운영을 위한 내부 소모품 및 집기류(이동 가구, 비품, 서적, 스탠드 등) 등은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모형도 주동 측벽의 층수 표기 사항은 실시공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지 모형도 상층부 디자인(구조물, 조명, 태양광설비, 난간, BI, 루버 등)은 이미지 연출사항으로 현장 및 공사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의 변경, 구조검토 결과, 인허가과정 및 현장시공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축물 외관(지붕, 옥탑 등), 측벽(문양 포함), 동출입구, 발코니 앞 장식물, 필로티(캐노피등), 창틀모양 및 색, 건축물 색채, 난간의 디테일,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DA급/배기창, 실외기실 형태 및 색상, 주차장램프 형태 등은 입주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계획 변경과 조정계획의 변경(분양자료에 따른 변경 포함)등으로 인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 익스테리어 등의 부분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건축심의 내용 이행 또는 심의 내용 중에서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와 면한 인접 대지 및 도로 등은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단지 경계부의 옹벽 및 사면의 종류, 노출 범위, 높이, 길이, 형태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노출되어 있는 우수관 및 배수관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우수 및 오수 처리를 위한 낙차공으로 인해 일부 세대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저층부 외벽마감, 동 현관, 지하 출입구, 쉼터, 건축 및 토목옹벽 등 공용부분은 구조검토결과 및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승인관청의 인허가 절차에 따라 본 공사 진행 중에 색채, 입면, 옥탑구조물, 조경, 사인물 등에 대하여 디자인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심의결과에 따라 인허가 도서, 분양 시 견본주택에 표현된 모형 또는 분양홍보물의 계획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 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엘리베이터의 속도 및 사양은 다르며,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마감이 다소 매끄러운 타일 또는 바닥 화강석 물갈기 제품이 적용될 경우 미끄러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단지 출입문은 마감을 고려하여 문 폭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 또는 내부(발코니)에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 단지 내 각동 1층은 필로티로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세대는 단지 내 보도 및 통로 등에서 세대 내부가 보일 수 있어 일부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법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각동 필로티 내에는 제연 환풍 급기용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리시설은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등이며, 내부시설물 및 내부시설물의 인테리어와 디자인 등은 실 시공시 최초 계획과는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보행로의 위치, 규모 및 주요 공간에 설치된 시설물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보관소 위치는 사용성 및 지차제 조례 등의 최종 검토결과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에는 생활폐기물보관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냄새,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폐기물 수거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수 있으니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생활폐기물보관소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설치 위치, 규모 등은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재 계획(사업계획승인(변경)도서 기준)된 단지 출입구외에 추가적인 출입구의 설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엘리베이터의 속도 및 사양은 다르며,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기계실, 환풍 및 이와 유사한 기계 설비 장치가 설치되는 실에 인접한 곳에서는 장비로 인한 소음,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필로티 하부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단지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필로티 및 안전 피난층에는 추가적으로 오배수, 우수 배관을 위한 공간이 추가적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에 제습기(지하층)가 설치될 수 있으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엘리베이터 홀에는 별도의 냉난방 및 환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각 동 최상층에 엘리베이터 제어판넬이 설치되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복도)에는 별도의 냉난방 및 환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당 사업지 대지경계선 내측으로 계획되어 있는 보도의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보안등) 및 경관조명에 의한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외부 계단, Top Light, 제연환풍, D.A)과 인접한 저층 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자전거 보관소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실시공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지역 가스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동 출입구, 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의 형태와 마감재, 컬러 등은 사업시행인가 변경 또는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하실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별 주차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었으나, 입주후 주민자치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 동별 주차영역을 한정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주차장의 사용에 대한 현재 주차계획 및 이에 따른 사용상의 여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현재의 주차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해당동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해당 세대에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로는 주동 구조물 하부를 이용함에 따라 기둥이 노출될 수 있으며, 차량 동선상에 막다른 길이 있어 회차 등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 1층 주차장은 관련 법규에 따라 택배차량 접근이 가능하도록 2.7M의 유효높이(차로에 한함)로 시공될 예정이며, 지하2층은 유효높이 2.3M(차로에 한함)로 시공될 예정으로(택배차량 출입불가) 각 유효높이 이내의 차량만 진입할 수 있음. 각 층별 제시된 유효높이는 차로에 해당한 높이이며 일부 주차구획의 유효높이는 동일하지 않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차구획은 전기차 충전구획, 장애인 및 경차 전용 구획을 포함하여 산정 및 설치되므로 모든 세대가 동일 조건의 주차구획을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계획은 오직 충전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계획으로써, 충전 이외의 일반 주차구획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비충전 점유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계획은 지상 및 지하 주차장 내에 구획되어 있습니다. • 소형택배차의 진입은 가능하나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택배차 등의 진입은 불가합니다.(지하2층의 주차장 천정과 2.3m로 소형택배차 진입 불가합니다.) • 지하주차장은 지상으로부터 지하 2개층으로 각 동별 지하주차장 여건에 따라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주차장에 면하거나, 복도 형태로 연결되는 동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단지레벨차에 의해 각 동, 코어별로 이용할 수 있는 층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시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주차대수는 법적 주차대수 이상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입주자별 차량 소유대수에 따라 입주 후 주차공간에 대한 불편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함은 동별로 1개소 설치될 예정이며, 동별 세대수 대비 수량 및 코어별로 접근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 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해야 합니다. • 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 현황에 따라 바닥 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각 세대간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각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 통합형이며, 지하층 특성상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 등에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절기 지하주차장 습기 제거 및 배기가스 배출용 배기팬 가동 관리 불량으로 인한 지하주차장 습기, 결로 발생 등 하자 및 사고는 사업주체와 무관하므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으로 외부에서 비, 눈 유입이 있거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주차장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홀로 출입하는 통로는 동별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출입문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휀룸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 돌출물, 급배기시설 (환기구 등) 및 D.A. (Dry Area) 위치, 크기, 개소, 형태는 추후 변경 될 수 있으며,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진동, 조망권,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전기 배기 루버 설치로 비상 발전기 운전 시에 따른 소음, 냄새, 분진, 진동, 매연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서 실시공 위치 및 개소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장비,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기계설비 덕트, 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을 공동 사용합니다. • 지하주차장 하부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단지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구조 형식 상 지하주차장의 주거 동 직하부와 기계실, 휀룸, 및 이와 유사한 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에 인접한 주차 구획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 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외부시설물은 이용 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공사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등)이 노출되어 있고,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시수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맨홀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수도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수, 오수 배관의 실시공 위치 및 개소는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수조 등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단지 전체 공동관리비로 부과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우수처리시설 설비가 있는 일부 세대에서는 사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위치 변경 등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지하 유출수 배수를 위해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되었으며, 공용 전기 요금 및 하수도 요금에 발생하고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저수조,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기계실 등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공용 공간이며, 이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및 사용비용은 각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 단지 내에는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용 급, 배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소음 및 냄새, 분진, 진동, 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전 반드시 확인 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보안/안전상의 문제로 경비실(이동식 또는 고정식)이 추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단지 내 남측 보행자 도로(연수서 2길과 접하는 부분,폭 1.5M)는 인허가청의 사업승인조건에 따라 조성된 통학로로서 공용에 사용되어야 하므로, 타인의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 공용 통학로의 유지,보수,관리 및 모든 책임은 소유자(입주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행정관청, 사업주체, 시공사, 제 3자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의 사업승인 변경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 등의 디자인 변경과 아파트 외벽 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및 각종 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및 각종 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 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팜플렛,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자재는 성능향상을 위한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일부세대는 어린이 놀이터, 옥외운동시설, 커뮤니티 공간 등을 이용하는 입주민들로 인하여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계약 전에 반드시 견본주택에 비치된 모형도 등을 도서를 확인하시어 주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발생 소지는 없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접

설계	단위세대 및 마감재	외기에 면해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슴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도로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의 헤드라이트 및 보행자에 의해 거주 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지상주차장과 인접한 저층 세대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및 차량 진입 시 경광(사이렌)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진입부로 인해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배수관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 응축수 배수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제공되는 강마루는 스티프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의 경우 목재의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 및 변색의 우려가 있습니다. • 식재료 시공 부위는 가공으로 인해 무늬와 색상이 동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극과 스크래치(자연현상)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건본주택 내 설치된 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출용 조명은 분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구,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해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건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용도실 및 기타 출입문의 크기에 따른 가전, 가구 등의 출입, 설치 제한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가전제품 사이즈를 확인 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와 단열재 설치 및 결로방지 단열재 설치 등을 위하여 골조의 일부가 이격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골조와 조적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높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확장부위 벽체 등 내부 단열재는 마감 두께 확보 및 품질 향상의 이유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되어 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일부 건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되어 질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시공된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추가선택품목 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실 시공시 건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되어 질 수 있습니다. • 평형별로 제공 품목 및 선택형 제공 여부가 상이하오니 건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12호)을 준수하며 층간소음.진동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욕실문 여닫이시 신발걸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조명기구, 배선기구, 월패드, 디지털도어락, 세대분전반 및 세대통신단자함의 사양 및 설치위치,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설치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관디딤판, 주방상판 등에 사용되는 인조석은 특성상 색상과 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고, 분공사 시 건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색상 및 석재의 결은 다를 수 있으며, 공장 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 각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및 확장 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 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해 계획된 것으로 욕실 바닥구매 시공으로 인해 구간 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홈페이지, 팜플렛 등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단종, 품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및 건본주택에는 전기콘센트 및 스위치류의 환기 디퓨저의 일부만 표기되어 있으며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예정입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공간의 시설물에 대한 수량과 바닥, 벽체 마감은 사업주체의 실시설계 후 조정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세대가 속한 동 및 라인에 따라 세대 입구 공용부분 등이 상이하오니,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일조량 및 조망권은 당해 단지 여건 및 주변 여건으로 인하여 각 세대별로 상이하므로 계약 전 사전 확인하기 바랍니다. • 실시공사 공동주택(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안목치수가 도면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외부마감재(저층부) 시공으로 인해 간섭되는 외부창호의 규격이 축소 될 수 있으니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배치 상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급·배기구, 분리수거함 위치에 따라 인접세대는 생활권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지역은 난방 및 취사용으로 도시가스에서 공급(저압)될 예정이며 외부에 도시가스관이 부착될 예정입니다. • 본 단지의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 단지명칭, 동 표시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동의 없이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인허가 진행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가전기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 설치공간의 크기는 건본주택 및 사업승인(변경)인가도면과 같으며, 그 설치공간보다 더 큰 가전기기는 해당 공간에 설치될 수 없습니다. •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IoT 기능이 있는 생활가전 제품을 입주자가 별도 구매·설치 후 이용 가능하며, SmartThings 앱에 제품 등록 및 사용자 사전 등록 과정이 필요합니다.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삼성 SmartThings 사용 시)으로 연동 가능한 생활가전 제품 중, 옵션 선택 품목(IoT 내장 가전)을 제외 하고 입주민이 개별 구매하여 연동할 수 있는 생활가전 제품은 에어컨, 에어컨드레서,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로봇청소기, TV 등이며, 모델명은 삼성전자 홈페이지(www.samsung.com)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네트워크사와 연동하여 이용 가능한 서비스 기능은 개발 여건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제공 기능 또한 당사 및 삼성전자의 운영 정책에
----	------------	---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해 삼성 SmartThings 앱을 사용할 경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6.0 이상 및 iOS 10.0 이상(아이폰은 6이상 기종부터 지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IoT 기기의 Wi-Fi 연결을 위한 통신사별 인터넷 상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 가입을 권장합니다. 또한, 세대별 서비스 연동 비용은 입주 기간 종료 후부터 3년간 무상 제공되며, 무상 기간 이후에는 홈 IoT 플랫폼 제공사의 운영 정책에 따라 유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유상 전환 시에는 홈 IoT 플랫폼 제공사의 정책을 따릅니다. - 건본주택에 시공된 PL창호 및 유리는 기 선정된 제품(메이커)이 아니므로 차후 제품 선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형태, 크기, 색상 및 문의 열림 방향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주방가구, 일반가구, 욕실장 등의 비노출면(바닥, 벽, 천장)은 별도 마감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신발장, 침실, 붙박이장 등 고정형 가구 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지하주차장, 필로티, 주민공동시설 하부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에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단지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과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아일랜드 포함)하부에는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장 하부, 세면대 주변 및 주방상판 하부에는 별도의 코킹마감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부 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마감재 생산시기에 따라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일부 건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의 마감재 치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가족욕실, 부부욕실 도어는 본공사 시 ABS도어로 시공됩니다. - 타일은 제조과정에서 휨(변형)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현장 시공된 타일에서는 휨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질재 접합부위에서는 재료 특성상 수축, 팽창이 달라서 타일에 균열이 생기거나 변형이 생길 수는 있으나 현장에 부착된 타일에서는 변형이 생기지 않음) - 단위세대 결로방지재의 규격,두께,사양등이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 건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건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등의 기준으로 시공 예정이나, 층 및 향에 따라 발생하는 바람의 영향에 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해 창호의 형태가 건본주택에 제시된 형태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하부세대 천장 부위의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거실 우물천장 깊이, 폭, 커튼박스 깊이, 등기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우물천장에 단이 추가로 설치되거나 크기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세대와 인접하여 있는 세대는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어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하여 발코니 면적이 감소할 수 있으며 결로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의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풍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 등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입상관, 배수드레인, 수전(세탁기, 청소용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실외기실, 하향식 피난구는 배수 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선택 시 확장부위는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 추위를 느낄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창표면에 결로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주기적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발코니확장공사로 인한 면적 및 마감형태(돌출/변형) 등이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격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사시 설치 기준은 건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배관 및 배기 덕트가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 및 추가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장에 상부세대 배수배관이 시공되어 배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욕실 천장에 상부세대 배수배관이 시공되며 소음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동일 평형, 동일 타입이라도 해당 동 · 호수에 따라 비확장 발코니 및 발코니 확장 구간의 크기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시 구조체,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발코니 면적보다 실사용 면적은 줄어들어 시공되며, 선풍통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절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반드시 행정관청에 신고 및 관리주체에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창호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색상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1호에 의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에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표기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보일러(다목)	적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적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최소소비효율기준 만족 제품 (0.7kW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 송풍기용 제외)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효율의 1.12배 이상 제품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 각 실별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고효율 변압기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 공용화장실에 설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에 의거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구 분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지하 1층	2.7m 이상	2.7 m 이상
지하 2층 (택배차량 진입불가)	2.3m 이상	

※ 본 아파트의 주차장 및 출입구의 높이는 공사시 부착물 등에 따라 실 유효 높이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내진성능 및 등급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라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구 분	등 급
내진능력	VII-0.166g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MMI등급, I~VII)로 표기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회 사 명	(주)정안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주)정안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주)정안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주)다우티이씨
감리금액	954,585,940	271,150,000	80,850,000	44,000,000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충주연수 경남아너스빌 센터원)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22025-101-0001000호	83,061,550,000원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 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시행사 및 시공사
상호	에스엠자산개발(주) 건설부문
주소	경기도 군포시 변영로 504(산본동, 산본역)
법인등록번호	135111-0040869

■ 브랜드 공동사용 업무제휴 협약

경남기업(주), 에스엠자산개발(주) 건설부문 사이에 2025 .06.20. 체결된 『브랜드 공동사용 및 시공관리 업무제휴 협약서』에 의해, 에스엠자산개발(주) 건설부문이 자체분양사업 또는 도급공사를 수행할 경우에 경남아너스빌 브랜드를 공동사용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며, 상호 간에 기술력, 인력, 연구개발성과 등의 공유를 목적으로 업무제휴되어 있어, 경남기업(주)과 에스엠자산개발(주) 건설부문이 공급하는 건축물들은 통일되고 향상된 품질을 고객 여러분께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충주연수 경남아너스빌 센터원의 (단독, 공동) 시공사인 에스엠자산개발(주) 건설부문은 경남기업(주)의 시공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위 공동브랜드에 대한 적절한 사용권자임을 알려 드립니다.

■ 홈페이지 : 충주연수 경남아너스빌 센터원 홈페이지 (<https://yeonsu-honorsville.co.kr>)

■ 견본주택 위치 : 충주연수 경남아너스빌 센터원 견본주택(충주시 연수동 1347번지)

■ 분양문의 : ☎ 1866-0243

-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청약 및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